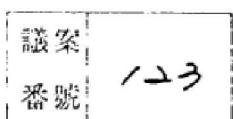


大田直轄市模範主婦賞條例中改正條例 案



提出年月日 : 1992. 6. 3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現行 大田直轄市各種委員會 중 그機能이 重複되거나 類似한 委員會 整備 및 活性化 計劃에 의거 模範主婦賞 審查委員會를 廢止하고, 德望이 높고 學識이 豐富한 專門人事로 構成되어 있는 母子福祉 委員會에서 模範主婦賞을 審查 決定토록하여 委員會 運營을 內實化하고, 行政能率을 圖謀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母子福祉委員會에서 模範主婦賞을 審查토록 母子福祉 委員會의 機能을 補強하고, 模範主婦賞 審查委員會 構成條項을 削除함
(案 第5條 및 第6條)

나. 模範主婦賞 審查委員會에 幹事와 書記를 두었으나 母子福祉委員會와 一致시키기 위해서 書記制度를 두지않기로 함.
(案 第8條)

3. 參考事項

大田直轄市 各種委員會 整備 및 活性化 計劃
: 企劃 01010 - 183(92. 2. 5)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모범주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모범주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삭제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수상자심사결정) 수상자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제1항중 “간사와서기”를 “간사”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부녀복지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조 표

현 행	기 정 안
제 5조(심사위원회 구성) <u>①모범주부</u> <u>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u> <u>직할시 모범주부상 심사위원회 (</u> <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위원회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을</u> <u>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u> <u>한다</u> <u>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u> <u>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 <u>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u> <u>회무를 총괄하여 회의지 회장이</u> <u>된다</u> <u>⑤위원장은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u> <u>전문인사와 제3조의 관련단체 임직</u> <u>원 및 공무원 중에서 대전직할시장</u> <u>이 위촉 및 임명한다</u>	(삽 제)
제 6조(수상자 결정) <u>수상자는 심사</u> <u>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u>	제 6 조(수상자심사결정)-- 모자 위원회 -----
제 8조(간사와 서기) <u>①위원회 사무를</u> <u>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u> <u>둔다</u> <u>②간사는 부녀복지과장이, 서기는</u> <u>생활지도계장이 된다</u>	제 8 조 (간사) ① ----- ----- ----- ②-----부녀복지과장이 -----